

II K-ICS 주요 내용

1. 지급여력제도

가. 개요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유지 존속을 위하여 자본의 충실을 기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건전성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의 핵심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에 지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규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하 ‘가용자본’)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이하 ‘요구자본’)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임을 의미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여기서 가용자본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K-ICS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별 위험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며 이를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한다.

〈그림 II-1〉 지급여력비율

$$\text{지급여력비율} = \frac{\text{지급여력금액}}{\text{지급여력기준금액}} \times 100 = \frac{\text{가용자본}}{\text{요구자본}} \times 100$$

자료: 저자가 작성함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요구 또는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⁵⁾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 II-1〉 적기시정조치 체계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비율	$50\% \leq K-ICS < 100\%$	$0\% \leq K-ICS < 50\%$	$K-ICS < 0\%$
요구사항	•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 사업비 감축 • 부실자산 처분 • 인력, 조직운영개선 • 주주, 계약자 배당 제한 • 신규업무 진출 및 출자 제한 등	• 점포 폐쇄, 통합, 신설제한 • 임원진 교체 요구 • 보험업 일부 정지 • 인력, 조직 축소 •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 처분 • 자회사 정리 등	• 주식 일부, 전부 소각 •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6월 이내 보험업 전부 정지 • 계약 전부, 일부 이전 등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K-ICS는 RBC와 동일하게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나 평가 방법, 측정 대상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K-ICS는 자산 및 부채평가방법, 가용자본 산출 구조, 요구자본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RBC와 차별화된 방법을 적용한다.

〈표 II-2〉 RBC 제도와 K-ICS 제도 비교

구분	RBC	K-ICS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 자산·부채 시가 평가
가용자본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중심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요구자본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5대 리스크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일반손보·시장·신용·운영 •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일반손보로 분리 •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geq 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2. 6),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생략)”

5)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경영개선권고), 제7-18조(경영개선요구), 제7-19조(경영개선명령)

나. 자산 및 부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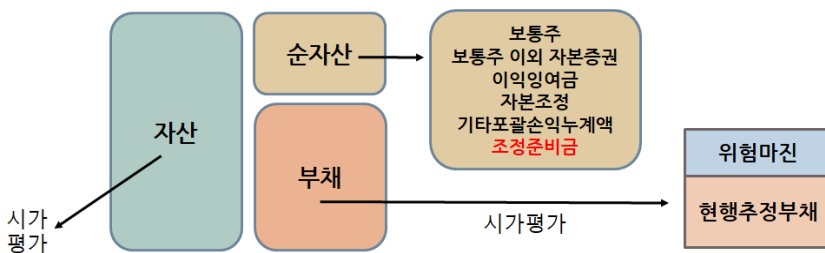
자산과 부채평가는 경제적으로 시장가치와 일관된 가치 산출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 대출채권 등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자산도 시가로 평가한다. 즉,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상각후원가측정(AC)과 같은 계정 구분이 없이 모든 자산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부채는 현행 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성된다. 현행 추정부채는 평가시점 무위험 수익률로 할인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해지, 중도 인출, 연금선택률 등)의 기대가치(평균)로 산출한다.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의하며 재보험출재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위험마진은 신뢰수준⁶⁾을 적용하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와 일반손해보험부채의 신뢰수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는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로, 일반손해보험부채는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6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한편,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금액인 순자산은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조정준비금은 일반감독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과의 차이로 보험계약마진(CSM), AC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그림 II-2〉 K-ICS 자산, 부채



자료: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2]”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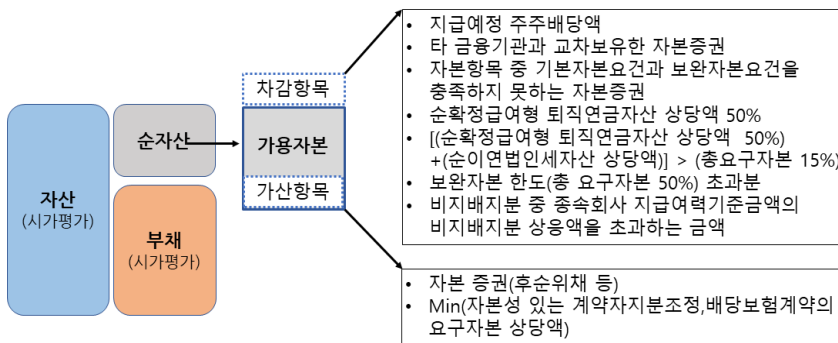
6) K-ICS 2.0은 자본비용법이나 K-ICS 3.0부터 신뢰수준법으로 변경됨

2. 가용자본

가. 개요

가용자본 산출 시 RBC는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나 K-ICS는 손실흡수성 정도를 판단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은 가산항목이나 지급예정 주주배당액 등은 차감항목이 된다. 가용자본은 RBC와 동일하게 자본의 질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나 보완자본 한도는 기본자본 100%를 적용하는 RBC와 다르게 총요구자본의 50%로 변경되었다.

〈그림 II-3〉 K-ICS 가용자본



자료: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2]”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함

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 기본자본

기본자본은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① 보통주
 - ②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 ③ 이익잉여금
 - ④ 자본조정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⑥ 조정준비금
-

조정준비금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금액에서 보험감독회기준 재무상태표상 ① 보통주부터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까지 차감하여 산출한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감독회계에서는 일부 자산 및 투자계약은 원가로 평가하므로 조정준비금은 건전성회계 재무상태표와 감독회계 재무상태표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은 계속기업기준 또는 청산기준에서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항목으로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거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이 해당된다. 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⑤와 ⑥의 합계액은 총요구자본의 15% 이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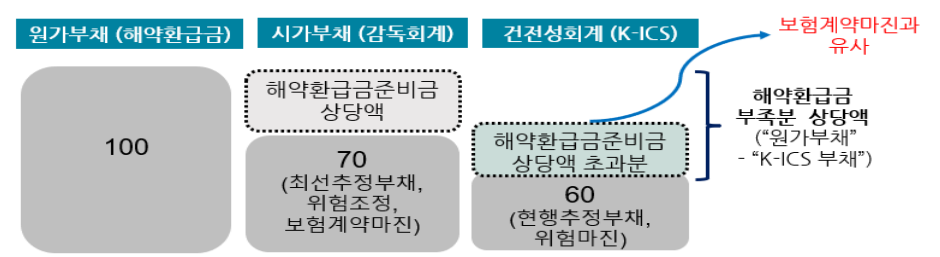
-
- ① 기본자본 한도 초과금액
 - ② 보완자본 자본증권
 - ③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 ④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 ⑤ 당해 보험회사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 ⑥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

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기본자본요건인 가용성, 지속성, 후순위성, 기타제한의 부재를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보완자본 자본증권은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 증권을 의미한다. 보완자본 자본증권으로는 대표적으로 후순위채가 해당된다.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감소할 때 발생한다. 해약환급금과 감독회계 보험부채 간 차이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으로 적립하므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세후조정액)은 감독회계 보험부채와 건전성회계 보험부채 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보험계약마진과 유사한 금액에 해당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은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미실현손익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때 미실현손익은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법인세 반영 전 금액으로 한다.

〈그림 II-4〉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를 한도로 한다. RBC에서 보완자본 한도는 기본자본의 100%였으나 K-ICS는 요구자본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한다. 기본자본을 기초로 보완자본 한도를 설정할 경우 경기순응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요구자본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위기상황 발생 → 손실 발생으로 자본 감소 → 보완자본 한도 감소 → 가용자본 추가 감소 → 위기상황 확대

한편, 자본 한도를 계산할 때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포함하지 않는다.⁷⁾ 즉, 보완자본이나 자본한도가 없는 보완자본이 된다.

7) 금리 상승 등으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이 발생할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금액인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조정준비금에 해당함. 보험 포트폴리오가 이익계약 위주로 구성된 회사

라. 자본증권 가용자본 분류 및 인정한도

자본증권이란 회사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손실을 상계하는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인 보험회사 자본증권에는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이 있다.

후순위채권은 발행회사 부도 시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낮고 만기가 통상 5년 이상으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어 K-ICS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낮고 만기가 보통 30년 이상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며 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단, RBC와 달리 Step-up 조건이 존재한다면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표 II-3〉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비교

구분	조건	자본 구분	인정 한도
신종자본증권	비조건부, Step-up 부재	기본자본	요구자본 10%
	조건부, Step-up 부재		요구자본 15%
	Step-up 존재	보완자본	요구자본 50%
후순위채	조건부 및 비조건부 여부에 상관 없음		

3. 요구자본⁸⁾

요구자본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양으로 측정되어 RBC의 99.0%보다 신뢰수준이 상향되었다. 요구자본 산출 대상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하위위험에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리스크가 새롭게 추가되어 RBC보다 다양한 리스크가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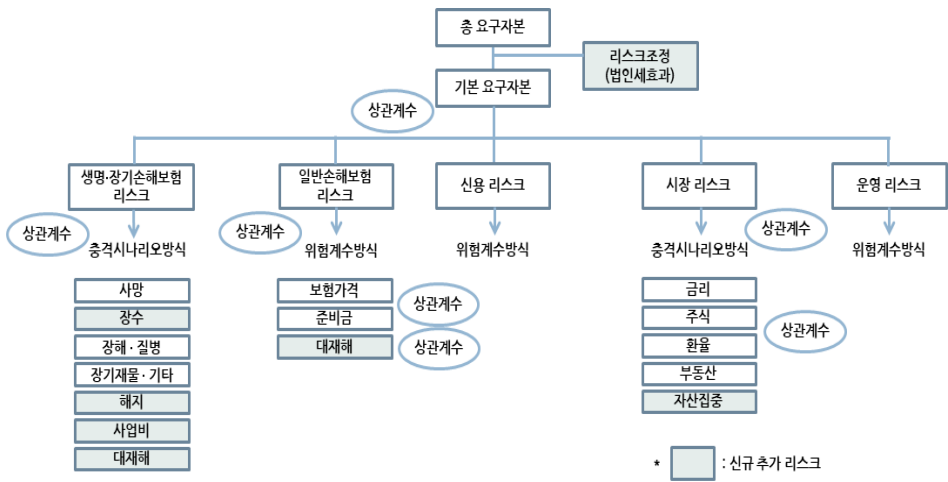
일수록 보험계약마진이 크게 산출되므로 조정준비금이 증가하여 보완자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8)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RBC에서는 상위 위험으로 구분된 금리리스크가 K-ICS에서는 시장리스크의 하위 위험이 되고, RBC의 하위 위험인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와 일반손해보험리스크는 K-ICS에서 상위 위험으로 구분되는 등 분류 체계도 변경되었다.

또한 분산효과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위험분류 단계별로 반영된다. 각 분류단계별로 상관계수가 적용되어 RBC에 비해 위험액 간 상관관계 반영 정도가 높다. RBC는 상관계수가 보험/금리/신용/시장위험액 간 적용되고 하위위험 중 보험위험액의 생명/장기손해/일반/자동차보험 간 상관계수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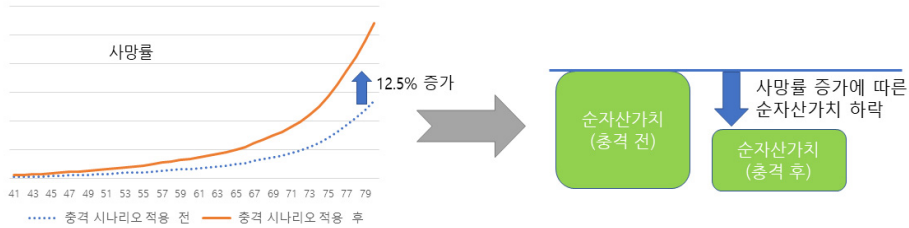
〈그림 II-6〉 K-ICS 요구자본



또한, 익스포저에 고정된 계수값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자산 및 부채 현금흐름에 충격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측정방식이 정교화되었다. 리스크 중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와 시장리스크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된다.

충격시나리오 방식은 충격(Shock 또는 Stress) 전후의 순자산 가치 변동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망리스크는 VaR 99.5% 수준의 사망률 적용(12.5% 증가) 전후의 순자산 변동분으로 측정된다. 이와 같이 위험요인별로 순자산 변동분을 산출하므로 계수방식을 사용하는 RBC 제도에 비해 계산량이 증가한다.

〈그림 II-8〉 충격시나리오 예시



자료: 저자가 작성함

이와 같이 측정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이하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기타요구자본은 계정별 합산방식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지 않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하거나 요구자본 대용치(총자산 8%)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K-IC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기본 요구자본 간 상관계수 외에 하위 위험 간에도 상관계수가 반영되어 위험 간 상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본요구자본인 개별위험액 간 “0.25”단위로 상관계수를 적용하나, 운영위험액과는 상관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및 일반손해보험위험액과는 “0”을 적용한다.

〈표 II-4〉 기본요구자본의 개별위험액 간 상관계수

구분	생명·장기손해	일반손해	시장	신용
생명·장기손해	1	-	-	-
일반손해	0	1	-	-
시장	0.25	0.25	1	-
신용	0.25	0.25	0.25	1

3장의 분석을 통해 요구자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과 시장위험액의 산출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7개의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한다. 사망위험과 장수위험은 음($\Delta 0.25$)의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장기재물·기타위험은 사망/장수/장해·질병/해지위험과 “0”의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표 II-5〉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구분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장기재물·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사망	1	-	-	-	-	-	-
장수	△0.25	1	-	-	-	-	-
장해·질병	0.25	0	1	-	-	-	-
장기재물·기타	0	0	0	1	-	-	-
해지	0	0.25	0	0	1	-	-
사업비	0.25	0.25	0.5	0.5	0.5	1	-
대재해	0.25	0	0.25	0.25	0.25	0.25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대재해위험을 제외하고는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12.5% 증가, 장수위험액은 사망률 17.5% 감소를 적용한다. 장해·질병위험액은 정액보상위험액과 실손보상위험액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장기재물·기타위험액은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이 16%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순자산 가치의 감소금액을 구한다.

해지위험액은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옵션행사위험액은 표준형과 저해지환급형⁹⁾을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옵션행사위험액은 옵션행사율¹⁰⁾이 35% 증가와 35% 감소하는 경우 중 순자산가치 감소금액이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대량해지위험액은 금융위기 시의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저축성보험 계약의 35% 및 보장성보험 계약의 25%가 일시에 대량 해지된다는 가정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한편 대량해지위험액에도 저해지환급형을 구분하여 위험을 측정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¹¹⁾

9)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전 보험기간 동안 35.0% 증가하는 경우, 전 보험기간 동안 35.0%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35.0% 감소하고 이후 보험기간 동안 35.0%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35.0% 증가하고 이후 보험기간 동안 35.0% 감소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순자산가치 감소액 합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산출함

10) 옵션은 보험부채평가 시 사용하는 계약자 옵션으로 해약률, 연금일시전환율, 중도인출률 가정이 포함됨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1. 1),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사업비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업비가 10.0%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1.0%p 상승하는 가정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대재해위험액은 극단적, 예외적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위험계수방식으로 측정한다. 전염병위험액과 대형사고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표 II-6〉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충격시나리오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장기재물 ·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사망률 12.5% 증가	사망률 17.5% 감소	- 정액: 위험률 13% 증가 - 실손: 위험률 10% 증가	위험률 16% 증가	- 옵선행사 35% 증가, 감소 - 대량해지: 저축성 35%, 보장성 25%	- 사업비: 10% 증가 - 인플레이션 1%p	전염병 대형사고

시장위험액은 자산집중위험액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위험 간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주식 및 외환위험액 내에도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주식위험액과 외환위험액은 음($\Delta 0.25$)의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나머지 위험 간은 “0.25”의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위험과 장기보유주식위험 간 상관계수는 1을 적용하고, 그 이외 주식유형 간 상관계수는 0.75을 적용하며, 외환위험액은 환율하락 및 환율상승 위험액 산출 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통화에 대해서 상관계수(0.5)를 적용한다.

〈표 II-7〉 시장위험액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

상관계수	금리	주식	부동산	외환	자산집중
금리	1	-	-	-	-
주식	0.25	1	-	-	-
부동산	0.25	0.25	1	-	-
외환	0.25	$\Delta 0.25$	0.25	1	-
자산집중	0	0	0	0	1

시장위험액은 자산집중위험액을 제외하고는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금리위험액은 금리상승시나리오, 금리하락시나리오, 금리평탄시나리오, 금리경사시나리오, 평균

회귀시나리오 등 5개의 금리충격시나리오를 자산과 부채에 모두 적용한다. RBC에서는 듀레이션갭 방식으로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으나 K-ICS는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도 유사해야 위험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text{금리 위험액} = \text{평균회귀금액} + \sqrt{\max(\text{금리상승위험액}, \text{금리하락위험액})^2 + \max(\text{금리평탄위험액}, \text{금리경사위험액})^2}$$

주식위험액은 선진시장상장주식, 신흥시장상장주식, 우선주, 인프라주식, 장기보유주식, 기타주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때 국내 주식은 선진시장 상장주식에 해당된다. 선진시장 상장주식 중 최소 10년 이상 보유, 보유계획 문서화 등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기보유주식에 해당되어 35%보다 낮은 20%의 충격시나리오를 적용받을 수 있다. RBC에서 주식위험액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8~16%로 K-ICS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K-ICS에서는 장기보유주식을 통해 위험액을 축소할 수 있다.¹²⁾ 한편 주가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에는 주가변동성에 대해서도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므로 RBC에 비해 주식위험액 평가의 정교성이 증가하였다.

〈표 II-8〉 주식위험액 충격시나리오

선진시장상장	신흥시장상장	우선주	인프라	장기보유	기타
주가 35% 하락	주가 48% 하락	신용등급별 주가 4~49% 하락	주가 20% 하락	주가 20% 하락	주가 49% 하락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 가격이 25%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의무보유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한다.

12) 노건엽 외 2인(2021)

외환위험액은 환율하락위험액과 환율상승위험액 중 큰 금액과 가격변동위험액을 합산한다. 환율 충격시나리오는 35개국 통화에 대해 제공되며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통화에 대해서만 상관계수 0.5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 감소금액을 합산한다. 가격변동위험액은 환율 관련 파생상품 갱신 시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한 금액이다.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익스포저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상대방은 신용등급별, 부동산은 개별 및 전체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예치금, 주식 및 채권, 신용공여, 장내외 파생상품 등이 해당되며 특별계정 자산(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변액보험), 중앙정부 등 신용리스크 위험계수 '0'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등은 제외된다.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 집중위험액'과 '부동산 집중위험액'을 각각 평가하여 산출한다. 거래상대방 집중위험액은 신용등급별 한도 및 위험계수가 차등적으로 제시된다. 부동산 집중위험액은 개별 부동산위험액과 전체 부동산집중위험액 중 큰 금액을 평가하고 개별부동산은 단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로 근접한 부동산(250m 이내)도 포함된다.

$$\text{자산 집중 위험액} = \sqrt{\text{거래상대방 집중 위험액}^2 + \text{부동산 집중 위험액}^2}$$

〈표 II-9〉 자산집중위험액 한도 및 위험계수

구분	신용등급	한도	위험계수
거래상대방	1, 2	4%	15%
	3, 4	3%	25%
	5, 6, 7	1.5%	50%
부동산	개별	6%	20%
	전체	25%	

자료: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예를 들어 총자산 10조 원에서 특정 거래상대방(1등급) 주식 1조 원을 투자한 경우, 주식위험이 먼저 측정되고 총자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산집중 위험액이 측정된다.

- 주식위험: 1조 원X35%(선진시장 위험계수)=3,500억 원
- 자산집중위험액: 6,000억 원X15%=900억 원
 - 1등급에 대한 자산집중한도 4,000억 원(=10조 원X4%),
 - 한도초과분 6,000억 원(=1조 원-4,000억 원)
- 주식 1조 원에 대한 주식위험과 자산집중위험액이 모두 측정되어 4,400억 원의 위험액이 됨(자산집중위험액은 분산효과 적용하지 않음)

4. 경과조치

가. 개요¹³⁾

경과조치는 제도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지급여력비율을 상승시키는 경과조치는 가용자본, 요구자본, 보고 및 공시 등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공통 적용과 선택 적용으로 구분되며 공통 적용 사항은 별도 신고 절차가 없이 적용되며 선택 적용 사항은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표 II-10〉 경과조치 구분

구분		경과조치의 종류	
공통 적용	가용자본	제도 시행前 기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연장	
선택 적용	가용자본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	
	요구자본	신규도입 위험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측정기준 강화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
			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

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3. 14),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 -”

제도 시행 전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동일하게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며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2025년 12월 말까지 1개월씩 연장된다. 한편,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 신규 도입 보험위험, 주식위험 및 금리위험에 대한 경과조치는 회사별 선택사항으로 일정 조건 만족 시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신규 도입 보험위험은 생명(장기)보험리스크 중 RBC에서 측정하지 않은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위험이 대상이며 주식위험 및 금리위험은 K-ICS 대비 RBC위험액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는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 제출, 경과조치 전후 K-ICS 비율 공시, 배당성향 제한 등으로 관리되며 보험회사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조기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적용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중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회사는 총 19개사이며, 이 중 생명보험회사가 12개로 전체 생명보험회사 중 5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11〉 경과조치 신청회사 수

구분	회사 수	경과조치 미신청	경과조치 신청	
			회사 수	비중
생명보험회사	22	10	12	54.5
손해보험회사	20	14	6	30.0
재보험사	11	10	1	9.1
총계	53	34	19	35.8

경과조치 종류별로 보면 가용자본 감소분은 생명보험회사 4개사만 신청하였으며 신규도입 보험위험은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 신청하였다. 주식위험은 12개사, 금리위험은 8개사가 신청하여 금리위험에 비해 주식위험 신청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경과조치 종류별 신청현황

구분	경과조치 신청회사 수	가용자본	요구자본		
			신규도입	주식위험	금리위험
생명보험사	12	4	12	10	5
손해보험사	6	-	6	2	3
재보험사	1	-	1	-	-
총계	19	4	19	12	8

나. 공통적용 경과조치

1) 가용자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은 10년(2032년 12월 31일)동안 인정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는 기본자본으로 분류되며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자본증권은 한도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후순위채가 제도 시행 전 발행되었다면 보완자본 한도(총요구자본의 50%)를 초과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2)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¹⁴⁾ 및 경영공시 제출 기한¹⁵⁾은 현행보다 1개월씩 더 연장되는 방안이 제도 시행 초기 3년간(2025년 12월 31일) 적용된다. 즉,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와 경영공시는 2025년 12월까지는 분기 결산 종료 후 3개월, 연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2026년 1월부터는 현행과 동일하게 분기 결산 종료 후 2개월, 연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14)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

15)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2022-53호, 2022.12.22.〉 제3조(경영공시에 대한 특례)

다. 선택적용 경과조치

자본 감소분, 신규 도입리스크, 주식리스크,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선택사항으로 일정 조건 만족 시 10년간(2032년 12월 31일)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자본감소분

자본감소분은 시행 전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에서 시행 후 자본 상당액(운용자산-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부채)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비율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할 수 있다.

〈표 II-13〉 자본감소분 연도별 적용비율

(단위: %)

회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이후
잔여 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적용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본감소분 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평가시점의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하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자본감소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K-ICS 보험부채	K-ICS 시행 전 보험부채
보험료부채 + 계약자배당 관련 부채 + 위험마진 - 보험계약대출 - 재보험자산 중 출재보험료부채	① 해약환급금 +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 보증준비금 - 보험계약대출 잔액 - 재보험자산 중 미경과보험료 ②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에 따라 추가로 적용한 금액 (이하 'LAT적립액')

운용자산은 건전성회계 재무상태표상의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 계약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은 업무보고서 중 재무상태표(AH050 / AI051)의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며, 운용자산(특별계정의 운용자산 포함)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자본감소분은 자산·부채 평가금액 조정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세율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평가 시 적용한 이연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직전 자본감소분 산출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금융환경 급변 등으로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하여야 한다. Solvency II에서는 매 2년마다 또는 리스크프로파일의 중요한 변화(무위험금리 50bp 변동, 지급여력비율의 충격)로 재평가 요건을 제시한다.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는 재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경과조치와 달리 중도신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 요구자본

신규 도입리스크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RBC에서 측정하지 않은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리스크를 대상으로 매년 10%씩 위험액을 인식한다.

〈표 II-14〉 신규 도입리스크(장수, 사업비, 해지, 대재해) 연도별 적용비율 (단위: %)

회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이후
잔여 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0년
적용 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식리스크, 금리리스크는 K-ICS 대비 RBC 위험액이 60%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즉, K-ICS 금리위험액이 100억인 경우 RBC 금리위험액이 50억이라면 K-ICS 대비 RBC 금리위험액이 50%로 60% 이하이므로 적용 가능하며 2023년에 위험액의 60%를 적용한 후 매년 4%씩 증가시켜 2033년 이후 100% 적용한다.